

윤리규범 준수 서약서(1/3)

[(이하 "[당사/본인]")은, '피에스앤마케팅(주) 및 그 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의 거래(현재 진행 중인 거래 및 장래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거래를 포함함. 이하 "모든 거래"라 한다)와 관계에 있어 윤리성과 신뢰도의 확보·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 및 공감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정착 및 비윤리 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이행과 책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이하 "본 서약서"라 한다).

제1조 (목적)

- ① [당사/본인]은 본 서약서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회사와의 모든 거래에 본 서약서가 규정하는 윤리실천사항을 준수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인지합니다.
- ② [당사/본인]은 회사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UN 부패방지협약,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등을 포함한 모든 국내외 뇌물 및 부패 방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 하겠습니다

제2조 (불공정 위반 거래 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 ① [당사/본인]은 회사와 진행했던 과거의 거래 관계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상관례를 위반하거나 특히, 다음과 같은 비윤리 행위가 없었음을 진술 및 보장하고(비윤리행위로 인해 제재를 받고 제재 기간이 종료된 건은 제외), 향후 거래(현재 회사와 진행 중인 거래 및 장래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모든 거래를 포함함)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상관례 위반이나 비윤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당사/본인]은 타사 및 제3자와의 거래 행위에 있어서도 기업 윤리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비윤리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1. 회사 소속 임직원 및 회사 소속 기업진단(에스케이)에 대한 금품, 향응, 접대 및 기타 금전적/비금전적 이익 제공 행위. 이익 제공과 관련한 비윤리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되 그에 한정되지 않음

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향응, 접대 행위

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윤리규범 준수 서약서(2/3)

다. 부채의 탕감 또는 제3자에 대한 부채의 상환 행위, 비전형적인 동산/부동산 거래*

*정당한 근거 없이 통상적인 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금액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거래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비전형적인 동산 및 부동산 거래

라. 금전소비대차 및 물적, 인적 담보제공 거래

마. 기타 체결 형태를 불문하고 장래에 대한 보장(퇴직 후 고용 및 취업 알선, 거래 계약 체결 등)에 대한 약속 등

2. 귀사와의 거래 중 제3자와의 담합행위 및 기타 다음의 불공정/비정상 영업행위. 행위유형은 다음과 같되 그에 한정되지 않음

가. 계약서·증빙문서 등 귀사와의 거래 관련 서류 위변조 행위

나. 잘못된 정보를 고객에게 알려 귀사 또는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다. 귀사와의 거래에서 알게 된 귀사의 영업비밀(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 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귀사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등에 직접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라.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고객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행위

마. 실적, 인센티브 편취 등을 위한 불편법 행위

- 부가서비스, USIM 카드 등을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가입(구매)시킨 행위

- 서비스 이용 및 상품 가입 시 명의를 다른 신분증·증빙 문서 등을 제출하는 행위

- 현금 판매, 일시납 건을 할부 또는 [당사/본인] 카드로 결제하여 현금을 편취하는 행위

- 실사용자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가개통한 행위

- 기타 업무처리규정, 업무처리지침 위반 행위

바. 기타 고객을 기만하고 불만을 야기시키는 행위

3. 귀사 또는 귀사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4. 귀사의 유무형 자산의 손해를 초래하는 위법행위 및 귀사 임직원에 위법을 강요하는 등 행위

5. 기타 귀사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당사/본인]가 위 ①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사는 [당사/본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비윤리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요청하는 관련

윤리규범 준수 서약서(3/3)

자료(비윤리 행위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 금융자료 포함)의 제출 등 모든 협조를 다 하겠습니다.

- ③ 비윤리 행위 발생(귀사와의 과거 거래와 관련된 비윤리 행위의 사후적 적발을 포함) 시, 귀사가 [당사/본인]의 비윤리 행위 발생 사실 및 당해 비윤리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정보(이하 "비윤리 행위 관련 정보")를 귀사 및 귀사 소속 기업집단(에스케이) 내 모든 계열회사(이하 "비윤리 행위 관련 정보 공유 계열사")에게 통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당사/본인]은 이러한 통지 및 그 결과 발생하는 비윤리 행위 관련 정보의 공유가 귀사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본인]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④ [당사/본인]은 귀사 및 비윤리 행위 관련 정보 공유 계열사가 비윤리 행위(타사 및 제3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공개적으로 알려진 당사의 비윤리 행위도 포함)를 근거로 [당사/본인]과의 거래(장래 발생되는 입찰에 대한 참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대한 제재조치 (계약 갱신 거절, 신규 거래 제한을 의미하되 비윤리 행위가 발생한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귀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비윤리 행위에 상응하는 합당한 제재조치를 의미함)를 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귀사 및 비윤리 행위 관련 정보 공유 계열사를 상대로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하는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⑤ [당사/본인]은 [당사/본인]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비윤리 행위를 제의 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할 것이며, 그 내용을 즉시 귀사의 윤리경영 채널(e-mail: clean-ps@skpsnm.com)에 알리고 비윤리 행위 관련 조사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상호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서명(날인)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 귀하